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1월15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가. 대통령실 소관
   나. 특임장관실 소관
   다. 국회 소관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3
   가. 대통령실 소관
   나. 특임장관실 소관
   다. 국회 소관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 ····· 7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7
   가. 대통령실 소관

나. 특임장관실 소관
다. 국회 소관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유승우・이종진・김장실・유성엽・황주홍・김세연・이우현・신경림・이노근・김성찬 의원 발의) ····· 8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발의)(이용섭 의원 외 127인 발의) ····· 8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하태경・김현숙・김정록・박인숙・정성호・김태원・김을동・정수성・박민식・유기준 의원 발의) ····· 8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우남・이춘석・유기홍・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김춘진・전정희・배기운 의원 발의) ····· 8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명연・배재정・황주홍・유대운・최민희・김태년・문병호・임수경・김윤덕・전정희 의원 발의) ····· 8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원혜영・박남춘・김동철・장병완・우원식・이춘석・조정식・장하나・강기정・안규백・김기식 의원 발의) ····· 8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용익・김영주・배재정・김우남・배기운・최동익・문병호・이춘석・이미경・김민기・신경민・강동원・최민희・유성엽・정성호・김승남・김재윤・김동철 의원 발의) ····· 8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문병호・배재정・전병헌・백재현・박홍근・김민기・민홍철・강동원・김경협・유성엽・홍종학・신장용・정성호 의원 발의) ····· 8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기정・김현미・전병헌・김관영・장병완・안규백・이낙연・김경협・김춘진 의원 발의) ····· 8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기춘・박범계・박수현・박홍근・부좌현・서영교・양승조・원혜영・윤호중・이언주・정호준・한정애 의원 발의) ····· 8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용익・김영주・배재정・김우남・배기운・최동익・문병호・이춘석・이미경・김민기・신경민・강동원・최민희・유성엽・정성호・김승남・김재윤・김동철 의원 발의) ····· 8
1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발의)(이용섭 의원 외 127인 발의) ····· 8
15.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권은희・김기선・김기현・김도읍・김명연・김을동・김현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유일호・이주영・이현재・홍지만 의원 발의) ····· 8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노철래・김을동・이우현・정갑윤・이채익・이현재・권성동・염동열・민병주・손인춘・이한성・박인숙 의원 발의) ····· 8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李宰榮・송영근・이강후・김기선・박대출・이완영・권은희・전하진・정수성・정의화・김태흠・안덕수・이장우・이헌승・김진태・이채익・홍지만・김동완・유기준 의원 발의) ····· 8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원혜영・최민희・배기운・김재윤・유대운・박민수・정성호・김용익・민홍철 의원 발의) ····· 8
1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8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가. 대통령실 소관

나. 특임장관실 소관

다. 국회 소관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한구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실 소관, 특임장관실 소관, 국회 소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윤관석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예결심사 소위원 윤관석 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11월 6일 박기춘 소위원장과 김을동 위원, 서용교 위원, 이현재 위원, 홍지만 위원, 한정애 위원, 성완종 위원, 본 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622억 1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첫째, 대통령실 본부의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 대비 10.8%(31억 17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정부 전체 인건비 증가율보다 초과한 예산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대통령실의 정보화사업비는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통령실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실 본부 2500만 원, 경호처 6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은 경호행사의 증가를 고려하여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임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32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국외업무여비로 최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국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3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254억 39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별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3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591억 3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첫째, 국회의원의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2013년도 수당 증액분 6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둘째, 국제회의 참석 경비는 최근 3년간의 불용액을 고려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남북교류행사 지원 경비는 2008년 이후 전혀 집행되지 못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첫째, 의정활동지원인턴 고용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의원 보좌직원과 같이 월 32시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18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둘째, 국회청사 청소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맞추어 처우를 월 133만 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청사 출입 보안유지를 위하여 전자출입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8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은 독도정보자문위원회의 효과성이 낮으므로 관련 예산 6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국회의원실의 외국자료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번역료 5000만 원을 증액

하고 국회도서관에 이용자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6350만 원이 감액된 147억 4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사업의 무대 설치 및 홍보 비용을 절약 집행하도록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72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7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은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연구용역사업은 효과성이 낮으므로 7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9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은 사업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현지조사비 1900만 원 등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구 윤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정 절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수당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신의진 위원 예.

○위원장 이한구 말씀하십시오, 신의진 위원님.

○신의진 위원 신의진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의정활동지원 인턴 및 국회청사관리 용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심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국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예산안 규모를 증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위 심사결과 중에서 국회 소관 증액 예산재원은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함으로써 내년도 국회 예산안 규모가 순증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지원 인턴 경비의 경우에 첫 번째 인턴 고용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두 번째 초과근무수당을 월 32시간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8억 1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고용기간 1개월 연장 예산 9억 1100만 원만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회청사 용역업체 위탁운영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맞추어 월 133만 원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7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내년도 처우개선분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5억 5300만 원을 제외하고 11억 4700만 원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출입시스템 도입비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 중 5억 원만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편의공간 설치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절약 집행을 위해서 9200만 원만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불용액 등 집행실적을 고

려해서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인건비는 그동안 불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6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그동안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3억 원을 감액하며 의원사무실 집기교체비용은 기존집기의 재활용 등으로 절약 집행하면 2억 원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증감 내역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하게 되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5219억 2400만 원 중에서 29억 1500만 원이 각각 감액 및 증액되어 내년도 국회 예산안은 순증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예산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대비 순증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구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제가 사실 예산을 좀더 세밀하게 보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좀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신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데 사실 제가 중간에 제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턴의 경비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인턴 부분을 없이 했다라거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아픔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정감사 기간까지 지내고 오다 보니 가장 어려운 직책이 인턴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궂은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좌관이나 다른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 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구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2개월을 원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고 가장 약한 사람의 약한 고리인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고 가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대로 가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의원들의 것에서 조금 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한구 김기현 위원님 말씀……

○김기현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이 인턴 경비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청소용역업체 위탁운영 관련 비용도 사실은 최대한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올리고 한 그런 고민을 한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에 맞추어 국회에서 세비를 스스로 동결해서 감액한 것까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 이번에 올렸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한 단계 올리고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리고 재정 여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양당 간사 사이에 논의를 여러 차례 한 끝에 이번에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영교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하고 오늘 수정된 것으로 처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정 제안하신 것이 양당 간에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윤관석 위원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간사 사이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된 것인가요?

○윤관석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한구 또 의견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윤관석 위원 이것이 아마 처음에 예산소위에서 했다가 다소 약간 조정 작업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뒤에 같이 얘기가 좀 불충분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 한데, 또 소위에서 했던 안이 그대로 사실 올라오는 것이 관례이기는 한데 그런 데 대한 유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하게 양당 간사 간에 논의는 되었던 사항

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간사님께서 아마 본인 법안 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서 대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여러 다른 입장들도……

○우원식 위원 제가……

○위원장 이한구 우 위원님!

○우원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사업에 국제심포지엄 7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국제심포지엄은 어디 가서 할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제가 답변을……

○우원식 위원 예.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그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 의견을 들어, 전체 상황을 들어서 국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위원 인권 심포지엄을 국내에서 국내 인권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제심포지엄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원식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고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계속 그냥 하겠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적인 여론을 좀 환기하고 국제의 양식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민……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엔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통과도 되고 국제적으로 다 환기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원식 위원 북한이탈주민 현지조사는 어디 북한 가서 조사하나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현지조사는 저희들이, 저 이전의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간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범수용소는 저 이전에도 시작을 해 왔고……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예산에 반영돼서 해 왔던 일입니다.

○우원식 위원 북한이탈주민 현지조사는 어떻게 해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간접적인 것입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접경지역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 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사정이 어떤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우원식 위원 이것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지금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일입니다.

○우원식 위원 북한인권 정책개발이나 북한인권 국내 네트워크 기반조성 이것은 누차 지적되었습니다만 성과도 별로 없고요, 괜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현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여기다 실명 공개를 해 가지고 위험만 초래하고……

오히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받았던 인권침해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사해서 국내인권 문제를 잘 해 나가셔야지 턱도 안 되는 무슨 북한이탈주민 현지조사를 한다고 괜히 긴장만 만들고, 유엔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심포지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유엔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나가서……

○우원식 위원 그런 점에서 이 북한인권 정책 관련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위험한 일들, 자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것 다 삭감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위원님, 유엔에서의 활동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관계없습니다.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유엔과 세계 양식인들에게 호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 이전부터 이 예산은 있어 왔고, 또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기존부터 해 왔던 일이니까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원식 위원 해 왔던 일이 뭐 맨 잘못된 일들만 했다고 얼마나 누차례 지적이 됐어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말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생각보다는 달리 그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실명 공개한 적이 없고요. 그것은 뭐 다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원식 위원 실명 공개해 놓고 한 적이 없다고 저렇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구 여러 다른 입장들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솔선수범해서 국가 재정 절감하는 취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국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실 소관, 특임장관실 소관, 인권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장으로부터 2013년도 각 소관 예산안 의결에 대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 원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채우는 게 지난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

2.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

(11시38분)

○위원장 이한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 국회사무차장이 나와서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것 물론 질의하실 분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가. 대통령실 소관
나. 특임장관실 소관
다. 국회 소관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대통령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하금열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13회계연도 대통령실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고치고 개선해서 앞으로 대통령실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새해 예산안 편성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잘 사는 국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선진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장님들은 인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유승우·이종진·김장실·유성엽·황주홍·김세연·이우현·신경림·이노근·김성찬 의원 발의)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발의)(이용섭 의원 외 127인 발의)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하태경·김현숙·김정록·박인숙·정성호·김태원·김을동·정수성·박민식·유기준 의원 발의)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우남·이춘석·유기홍·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김춘진·전정희·배기운 의원 발의)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명연·배재정·황주홍·유대운·최민희·김태년·문병호·임수경·김윤덕·전정희 의원 발의)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원혜영·박남춘·김동철·장병완·우원식·이춘석·조정식·장하나·강기정·안규백·김기식 의원 발의)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용익·김영주·배재정·김우남·배기운·최동익·문병호·이춘석·이미경·김민기·신경민·강동원·최민희·유성엽·정성호·김승남·김재윤·김동철 의원 발의)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문병호·배재정·전병헌·백재현·박홍근·김민기·민홍철·강동원·김경협·유성엽·홍종학·신장용·정성호 의원 발의)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기정·김현미·전병헌·김관영·장병완·안규백·이낙연·김경협·김춘진 의원 발의)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기춘·박범계·박수현·박홍근·부좌현·서영교·양승조·원혜영·윤호중·이언주·정호준·한정애 의원 발의)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용익·김영주·배재정·김우남·배기운·최동익·문병호·이춘석·이미경·김민기·신경민·강동원·최민희·유성엽·정성호·김승남·김재윤·김동철 의원 발의)
1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발의)(이용섭 의원 외 127인 발의)
15.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권은희·김기선·김기현·김도읍·김명연·김을동·김현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유일호·이주영·이현재·홍지만 의원 발의)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노철래·김을동·이우현·정갑윤·이채익·이현재·권성동·염동열·민병주·손인춘·이한성·박인숙 의원 발의)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李宰榮·송영근·이강후·김기선·박대출·이완영·권은희·전하진·정수성·정의화·김태흠·안덕수·이장우·이헌승·김진태·이채익·홍지만·김동완·유기준 의원 발의)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원혜영·최민희·배기운·김재윤·유대운·박민수·정성호·김용익·민홍철 의원 발의)
1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1시40분)

○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7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7항에 대해서만 직접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손인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의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인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이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접수 건수가 4400건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에 2, 3명의 아동이 성폭력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문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대체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선미 위원, 송호창 위원이 사임한 이후에 청원심사소위원회와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에 각각 한 분의 위원이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로 보임해 오신 부좌현 위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수현 위원은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구 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하금열 실장님, 예산 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할 생각이 없는데, 이것은 도저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재철 사장 문제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셨다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실장 하금열 제가 특별히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얘기한 게 없어요?

○대통령실장 하금열 예.

○위원장 이한구 우 위원님, 오늘은 예산 관련되는 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또 해 주시지요,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요.

○우원식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뵌 김에 얘기해야지……

○위원장 이한구 나중에 또 하십시다.

○서영교 위원 이것만 하시지요.

○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이미 전화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우원식 위원 아니, 양문석 방통위원이 그렇게 전화를 받고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하고 박근혜 캠프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김충일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재철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까?

○대통령실장 하금열 통화는 가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슨 지켜라, 달아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양문석 방통위원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장 하금열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했다는 이야기네.

○우원식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지요?

○대통령실장 하금열 예.

○위원장 이한구 됐어요? 그러면 답변하셨으니까 자꾸 다른, 의제 외의 발언 자꾸 하시면 회의가 또 이상하게 되니까……

○서영교 위원 지금 말고는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만……

○위원장 이한구 위원 여러분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원식 위원 아니, 국회에서 얘기 못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만났을 때 얘기를 해야지요. 언제 얘기합니까?

○위원장 이한구 그래도……

○서영교 위원 다른 사람은 안 할 테니까요, 우 위원님만 마저 정리하고 끝내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한구 아니, 다음에 회의 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말씀하셨고.

○우원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한구 또 뭘……

○윤관석 위원 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우원식 위원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 그 수사, 특검이 이렇게 짧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수사를 받는 기관에서 내곡동 수사를 이렇게 방해해도 됩니까?

실장으로서 한마디 해 보세요.

○대통령실장 하금열 저희들은 방해를 한 적이 없고요, 굉장히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 제출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위원장 이한구 우 위원님, 이제는 중단을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면 회의가 이상하게 됩니다. 회의 목적대로 하십시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관영	김기선	김기현	김명연
김을동	박기춘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부좌현	서영교	성완종
손인춘	신의진	우원식	윤관석
이장우	이철우	이한구	

○청가 위원(3인)

박대출	이언주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입법심의관	이계인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구희권
기획조정실장	진정구

국회도서관

관장	황창화
기획관리관	홍정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주영진
기획관리관	손석창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고현욱
기획관리관	김요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실

실장	하금열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경호처차장	서성동

특임장관실

장관	고홍길
제3조정관	남형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기획조정관	안종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이낙연·윤호중·전순옥·남인순·진성준·임수경·김제남·이완영·김태원·유대운·김민기·홍종학·배기운·신경림·최원식·이인영·강창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최재천·김우남·김용익·장하나·배기운·유대운·전순옥·문병호·민홍철·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홍익표·인재근·임수경·남인순·박홍근·김현·유은혜·윤관석·박주선·우상호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홍익표·인재근·임수경·남인순·박홍근·김현·유은혜·윤관석·박주선·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차별금지법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김재연·김미희·오병윤·김선동·이석기·이상규·임수경·김광진·장하나·

조정식 의원 발의)

11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